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시 주요 서식지 지정 등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84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시 주요 서식지 지정 등	2
※ 참고자료	8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절차	8
2. 멸종위기종 핵심서식지 보호 관련 외국사례(미국·호주)	9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29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가 진행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2.6%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개체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크게 감소하는 종 또는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위협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멸종

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시 주요 서식지 지정 등

개정안은 ①시·도지사 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②해당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련된 죄를 지은 자에게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79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① (생략)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 제1항 및 제2항----- ----- -----.
<신설>	제72조의2(가중처벌) 멸종위기 야생

현행	개정안
	<u>생물의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67조 및 제68조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련된 죄를 지은 자는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과 II 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되고 있음¹⁾²⁾.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³⁾, 특별히 보전할 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2) <참고자료1.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으로의 지정,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신·증축 등의 행위 제한과 출입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4)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5)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 제29조(출입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한 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훼손, 질 저하 등에 대한 지적과⁶⁾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단순한 개체 증식·보강 위주의 복원 한계에 따른 서식지 보호 및 보전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핵심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실효적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

다만, 개정안은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련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6)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공주보 지정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고리도롱뇽 집단폐사 사건 관련 생태원의 역할 수행 필요 등 (「2023년도 및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7)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멸종위기종 지정 시 종 목록 마련 후 공청회 또는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이 가능한 상태이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멸종위기종위원회(분과위 포함)의 심의과정에 개정안에 따른 지자체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

<참고자료1. 現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절차>

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참고로,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멸종위기종 또는 법적보호종 지정과 동시에 핵심 서식지를 지정하도록 하면서, 핵심 서식지 훼손시 형사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문 의 처

02)6788-5541

8) 참고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벌규정 중 특정 요건 해당시 선별적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 관련 특정 지역(환경보호지역)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4조(「형법」의 준용)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2.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9) <참고자료2.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 보호 관련 외국사례>

※ 참고자료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절차

단계	수행 내용	수행기관
평가 준비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및 관찰종 정밀조사	국립생태원
	평가 대상종 추가 자료 수집 및 데이터 분석	
	서식실태보고서 작성	
총 평가	각 분류군별(포유류, 어류, 식물 등) 1차 종 평가 회의(자문) (서식실태보고서를 바탕으로 신규 지정·해제·등급 조정·유지 대상종 검토)	멸종위기종 위원회 (분과위)
	각 분류군별 2차~3차 종 평가 회의(자문) (전문가 의견 불일치 대상종 최종 검토 및 평가 완료)	
	각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안) 작성	
검토 및 자문	멸종위기종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검토	멸종위기종 위원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목록 개정안 초안 작성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의견 수렴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개정 준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목록 개정안 확정	기후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준비 및 입법예고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II급, 관찰종 / 해제종)	
사후 관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관찰종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개정 목록에 맞춰 5년 계획 수립 및 연단위 조사)	국립생태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 멸종위기종 핵심 서식지 보호 관련 외국사례(미국·호주)

① (미국) 멸종위기종보호법 1973(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 (보호) 법적보호종 지정과 동시에 핵심서식지를 식별·지정(의무적)

▶ 법적보호종 서식지 지정 관련 조항

제1532조「정의」(5)-(A) 핵심서식지

- i) 해당 종이 점유하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 종 보전에 필수적인 물리적·생물학적 특징을 보유하며, 특별한 관리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 ii) 필요하면 현재 종이 점유하지 않더라도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33조「멸종위기종 지정」(a)-(3)-(A)

- 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종의 서식지가 핵심서식지로 간주되면 그 서식지를 핵심서식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 b-2) 해당 지역을 핵심서식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지역을 핵심서식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역을 핵심서식지로 지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종의 멸종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협력 및 금지)

▶ 법적보호종 서식처 보호를 위한 협력 및 금지 조항

제1536조「연방기관 협력」(a)-(2)

각 연방기관은 자의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보호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해당 종의 핵심서식지를 파괴 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38조「금지행위」(a)-(1)

- B) 법적보호종을 포획·살해·추적·괴롭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D) 법적보호종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처벌) 서식지 훼손 금지, 보호종 위해 및 핵심서식지 훼손 시 민·형사 처벌

▶ 제1540조 (a)-(1) 민사상 벌칙

이 법을 고의로 위반한 자 또는 법적보호종의 수입·수출업자가 제1538조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25,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40조 (b)-(1) 형사상 벌칙

제1538조 (a)-(1)의 금지행위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형에 처한다.

② (호주)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 1999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 (보호) 법적보호종을 등재함과 동시에 핵심서식지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등록·보호하도록 하고, 핵심서식지를 고의로 훼손하면 형사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법적보호종 및 핵심서식지 지정 관련 조항

제182조「멸종위기종 등급 분류」

야생에서 가까운 미래에 멸종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각한 위기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207조A「핵심서식지 지정」

- 1) 환경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식지를 등록부에 등재해야 한다.
- 2) 환경부 장관은 특정 서식지를 등록할지 결정할 때 그 등록이 보전에 가져올 잠재적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3) 핵심서식지 지정은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전문가위원회 등의 자문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 4) 등재된 서식지는 해당 종 또는 생태공동체의 핵심서식지로 간주한다.

○ (처벌) 제207조B 「핵심서식지 고의 훼손 금지」

- ▶ 1)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핵심서식지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가 성립된다.
 - a) 법적보호종의 핵심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b) 해당 행위로 법적보호종과 그 핵심서식지가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훼손될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 c) 해당 지역이 연방정부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지역인 경우
- 2) 1)-c)에 대해 위반한 경우, 엄격책임을 적용한다.
- 3) 1)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penalty units(벌점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를 부여할 수 있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